

전자기관사 면허취득교육 제도 검토

류기탁* · 이윤형** · 김종필***

*, **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A Review on the education system of ETO Certificate of Competency

Kitak Ryu* · Yunhyung Lee** · Jongphil Kim***

*, **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

핵심용어 : 전자기관사, 선박직원법, IMO 모델코스, 해기능력기록부

Key Words : Electro-Technical Officer, Ship Officer's Act, IMO model course, Competency Record

1. 서론

연구배경

- 2010 STCW 협약(마닐라 개정)에서 전자기관사 면허 제도 신설
- 주추진기관 750kW 이상의 선박에서 전자기관사 승무시 면허 필요
- 본 면허제도는 임의규정으로 기국에서 승무여부를 결정
- 국내의 경우, 강제화 아니지만 전자기관사 승무시 면허취득교육 수료하도록 규정
- EMSA의 해기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모델코스 교육시수를 충족하기 위해 **원격교육** 도입
- 원격교육을 포함한 전자기관사 면허취득교육 진행에 따른 문제점 식별 및 고찰

연구 방법

- 전자기관사(ETO) 국내법 검토
- 원격 교육 시행 시점 검토
- 면허취득을 위한 competency record의 해외 사례
- 국내시행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검토

3. 원격교육제도 검토

배경

- EMSA의 면허취득교육 지적에 따라 전자기관사 모델코스(7.08, 992시간) 충족 필요
- 좌학 교육으로 해당 시수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격교육 형태로 진행
- 원격교육은 모델코스를 기본으로한 학습 항목을 선박 승무시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임
- 전자기관사 면허취득 교육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일간 좌학교육과 **원격교육 6개월**의 기간으로 2019년부터 시행예정임
- 좌학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하면 되나, 원격교육은 시행시점을 검토 필요함.

2. 전자기관사 국내법 검토

- 전자기관사 면허시험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나 면허취득교육이 2019.01.01. 시행으로 있어 현재 자격취득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
- 선박직원법 시행령 5조 1항 1호에 전자기관사 삽입 필요
- 원격교육 정의에 대한 부분 수정 필요
- 6개월 원격교육 시행시점 검토 필요
- 6개월 원격교육에 대한 홍보 필요

5. 결론

- 전자기관사 지정교육기관 교육생의 면허취득교육 면제 조항 삽입 필요
- 면허취득교육의 원격교육에 대한 고찰
 - 2019년부터 강제 시행
 - 원격교육에 대한 시행시점을 검토하고 홍보 필요
- 전자기관사 Competence record의 외국 사례 검토
- 원격 교육 시행전 국내에 적합한 해기능력 기록부 제작 필요

* First Author : ryukitak@seaman.or.kr, 051-620-5776

† Corresponding Author : jpkim@seaman.or.kr, 051-620-5749